

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기초연금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으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·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의 효도수당 및 장수수당 지급규정을 폐지하여 기초연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4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에게 지급하는 효도수당 및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 폐지와 관련 서식 삭제
(안 제2조제6호, 제26조에서 제29조까지 및 별지 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기초연금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규대비표 붙임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.

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략) 6. “ <u>효도가정</u> ”이란 70세 이상의 <u>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세대 이상이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.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제26조(효도수당 지원 등) ① <u>시장은 효도가정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.</u> ② <u>효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효도가정의 직계비속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</u> ③ <u>신청서를 받은 읍·면·동장은 신청내용과 주민등록 등 관련공부 및 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
④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10일 이내에 확정해 신청한 달부터 개인별 금융 계좌로 지급한다.

⑤ 시장은 효도수당을 지급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효도수당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지급상황을 정리해야 한다.

제27조(노인장수수당 지원 등) ①

시장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에게 노인장수수당(이하 “장수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9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. 다만, 주민등록법에 따른 장기 출타자와 국외거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장수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연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8조(지급방법 등) ① 장수수

당은 직권조사를 통해 지급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장수수당

<삭 제>

<삭 제>

지급대상자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노인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자가(위임장 소지자를 말한다)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·면·동장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고,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대상자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한다.

③ 시장은 장수수당을 지급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노인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급상황을 정리해야 한다.

제29조(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및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. 다만,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

<삭 제>

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.

1.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이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때

2.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

3.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

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의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,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한다.

③ 시장은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이 중복되는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 효도수당을 지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기초연금법」

제25조(비용의 부담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.

② 생략

□ 「기초연금법 시행령」

제23조(비용의 부담 등)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.

② ~ ③ 생략

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·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(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)을 부담할 수 있다.

소 관 부 서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최 한 주
	담 당	윤 봉 화
	담 당 자	김 수 현 (480-5158)